

제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177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1771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1. 23 선고 2020가단637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권형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8. 18.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1. 23. 선고 2020가단637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존 도로’가 이 사건 토지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제주시 E 전 1699㎡ 중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위치에 도로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존 도로’가 이 사건 토지라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기존 도로’에 관하여 상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 문언상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 표시에 해당 도로가 제외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해당 도로를 제외하지 아니한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기존 도로’를 매매에서 제외하였다고 기재한 취지는 매매목적물 중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 점, ④ 달리 ‘기존 도로’의 소유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도로’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로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기존 도로’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 승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과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점을 승인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범휘